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 창 진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남 창 진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발의취지를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상위 규정인 국토교통부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되어 변경된 도로표지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가 하천복개구조물과 차집관거 주요 취약지점에서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하수가스의 조사항목을 현장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